

부산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1가단3021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29.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7. 5. 11. 접수 제26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천종호

별지